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6. 5 선고 2024가단1152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‘부동산의 표시’ 기재 건물 1층 중 선내 (가) 부분 175㎡[별지 ‘도면’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]를 인도하고,
나. 12,000,000원을 지급하고,
다. 2024. 3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신혁재

별지